

● 제323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4. 4. 2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1774

I. 개정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4. 4. 3.
- 다. 회부일 : 2024. 4. 8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(1)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조제2호, 제6조, 제18조제1항제2호, 별표서식2, 별표서식7)
- (2)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주소 변경(안 별표서식3)
- (3) 이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(안 제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4. 2. 8.~2. 28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본 개정안은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규정신설 및 변경을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.

□ 서울여성공예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 종료 개요

-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예 특화사업 운영을 통해 공예기업과 시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1)에 따라 설치·운영된 시설이나 2023년 12월 31일 자로 운영이 종료됨.
- 이는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2023.7.26.) 유사사업(여성창업플라자) 비교 후 통·폐합,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예산조정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'24년 예산안 본회의 의결('23.12.15.)후 2024년부터 사업종료하게 된 것 임.²⁾

1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2. 여성공예센터 :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

²⁾참고: 서울여성공예센터는 현재 3월30일로 위탁기간을 종료하고 재산반납목록(불용품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련 규제 삭제

(안 제4조제2호, 제6조, 제18조제1항제2호, 별표 2, 별표7)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1의2. (생략)</p> <p>2. <u>여성공예센터 :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</u>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의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</p>	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 제1호의2와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제6호까지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6조(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) 제4조제2호----- ----- 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6조(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)</p> <p>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.</p> <p>② 여성공예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</p>	<p><삭제></p>

품 처분결과 등)과 정산보고서 제출(4월 말) 과정 중이며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를 6월 말경 실시 예정임.(서울시 제공)

현 행	개 정 안
<p>각 호와 같다.</p> <p><u>1.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 지원</u></p> <p><u>2.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(성장)지원 사업 추진</u></p> <p><u>3. 공예분야 생활 창작 및 시민 참여 활성화사업 추진</u></p> <p><u>4.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</u></p> 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1의2. (생략)</u></p> <p><u>2. 여성공예센터: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 제1호의2와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- 현행 조례 제4조는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 서울여성공예센터가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제4조제2호, 제6조, 제18조제1항제2호, 별표2, 별표7을 삭제하고자 함.
- 개정안은 제4조제2항의 센터를 삭제하고 각 조와 호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나 제4조제1호의2 서울가족플라자 시설은 제4조제2호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고 있음.

□ 이용료의 반환 규정 구체화 조항 신설(안 제21조)

개 정 안
제21조(이용료의 반환)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 <u>납부한 이용료</u> -----.
1. <u>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</u>
2. <u>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</u>
3. <u>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</u>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에 따르면³⁾,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현행 제21조(이용료의 반환) 규정에서 시장의 귀책사유, 이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제1호부터 제

³⁾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3호까지 신설하고자 함.

- 이용료의 경우 사전에 납부하여 그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, 이용을 포기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⁴⁾
- 이에 현행 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사무의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, 개정안 제21조제1호의 구체적 반환규정을 두도록 함은 타당함.

3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서울여성공예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조문 정비는 필요성이 인정됨.

문 의 처

한송희 입법조사관 (02-2180-8146)ㄹ

⁴⁾ 법제처 「법령입안심사기준2023」 472, 202p. 수수료 반환 규정 및 반환에 관한 입법방식 참고.